

##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( 회차)

[ ] 예술인 [ ] 노무제공자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 \_\_\_\_\_ 접수일시 \_\_\_\_\_ 처리기간: 14일

### 1. 신청인 정보

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③ 주소 및 연락처	
(연락처: _____ )	

④ 임신기간(유산·사산인 경우에만 표시)

1. 11주 이내 [ ] 2. 12주~15주 [ ] 3. 16주~21주 [ ] 4. 22주~27주 [ ] 5. 28주 이상 [ ]

⑤ 출산일(출산예정일, 유산·사산일) 년 월 일	⑥ 영아의 주민등록번호	⑦ 다태아(多胎兒) 여부 [ ] 예 [ ] 아니오
⑧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(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연속하는 총 90일을 설정합니다)	전체 기간 (총 90일, 다태아인 경우 120일)	년 월 일 ~ 년 월 일
	첫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두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세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	네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(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)	년 월 일 ~ 년 월 일
⑨ 월평균보수 [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 이전 1년(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18개월)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]		원

### 2. 신청내용

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\_\_\_\_\_ 년 월 일 ~ \_\_\_\_\_ 년 월 일

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\_\_\_\_\_ 은행명: \_\_\_\_\_ 계좌번호: \_\_\_\_\_ 예금주: \_\_\_\_\_

### 3. 확인사항

⑫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?  
[ ] 예 (기간: \_\_\_\_\_ 금액: \_\_\_\_\_ 원) [ ] 아니오

⑬ 출산전후(유산·사산)급여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습니까?  
[ ] 예 (금액: \_\_\_\_\_ 원) [ ] 아니오

⑭ 신청기간 연장 사유(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적습니다)

### 4. 서명 및 날인

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4·제77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·제12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\_\_\_\_\_ 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### 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(출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*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 2.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(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,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3.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다만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선택)

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[ ] 동의함 [ ] 동의안함)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◎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(유산·사산)급여는 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◎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4 또는 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합니다.
- 1.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(1, 2, 3, 4회차)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2. ①, ②, ③란에는 신청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적습니다.
- 3. ④란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(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.
- 4. ⑥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,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. 태아, 유산·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⑥란에 111111-111111로 적습니다.
- 5. ⑦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'[ ] 에' 부분에 표시합니다
- 6. ⑧란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. '전체 기간'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는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의 기간을 적고, '첫번째 30일 중 지급기간'에는 첫 번째 30일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 지급요건을 갖춘 지급기간을 적습니다.
- 7. ⑨란의 월평균보수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따릅니다.
  - ※ 월평균보수: 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 이전 1년(출산일 또는 유산·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18개월) 간의 월평균보수의 합/총사개월수
- 8. ⑩란에는 총 지급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.
- 9. ⑪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- 10. ⑫란은 ⑩란에 적시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'[ ] 에' 부분에 표기하고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(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'[ ] 아니오' 부분에 표기).
  - ※ 출산(유산·사산)일 전후 90일 이내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,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.
- 11. ⑬란은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'[ ] 에' 부분에 표기하고 금액을 적습니다(없는 경우에는 [ ] 아니오 부분에 표기).
- 12. ⑭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, 본인, 배우자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,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